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7 - 48 - 307호

안 건 명 통신사 영업점 등 24개사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7. 12. 2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매출액(단위 : 백만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기획조사(2017.4.25.)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7. 1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7. 7. 21.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1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제2호)’,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제3호)을 포함하는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 개인정보 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제1호~제7호)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교육목적 및 대상(제1호)’, ‘교육 내용(제2호)’, ‘교육 일정 및 방법(제3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아니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행령 제15조제1항, 고시 제3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참고〉 피심인의 위반사항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내부관리 계획	§28①1호	§15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행위(고시§3③)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각각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법 제28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사업규모가 소기업*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1개인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업종별 기준에 따라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사업자(전자상거래, 방송통신업 등)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과태료 가중	과태료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1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